

2023년 원전관련기술개발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

2023년 원전관련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3년 8월 16일

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이사장

1 사업목적

- 글로벌 원전산업 확대 대비 원자력 전문기업 육성

2 지원내용

- 사업명 : 2023년 원전관련기술개발지원사업
 - 지원기간 : 2023.09.~2024.05.(9개월)
 - 지원예산 : 금458,875,000원(금사억오천팔백팔십칠만오천원)
 - 지원규모 : 5개사 내외 / 기업당 최대 1억원 한도 내 지원
 - 지원대상 : 아래의 분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
 - 가. 경상북도 소재 원자력 쏠분야 전후방 중소기업
 - 나. 원자력으로 업종전환 또는 업종추가를 희망하는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
(사업다각화 및 매출다각화를 희망하는 기업)
- ※ 중소기업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함.

신청자격	
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 (①과 ② 중 1개 조건 이상 필수 충족)	① 경상북도 내 '주사무소' 또는 '공장등록' 설치·운영
	② 경상북도 내 '기업부설연구소' 또는 '연구전담부서' 설치·운영

- 경상북도 소재 여부 판단 기준 : 사업공고일 현재 기준 기업의 본사 또는 연구소가 경상북도 내 있는 경우
 - 경상북도 외 기업은 협약 후 2개월 이내 본사 또는 연구소 또는 공장 주소 이전 필수 조건으로 지원
- * 이전된 주소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협약 후 2개월 내 미제출 시, 지원금 전액 환수

○ 추진체계 : 단독 또는 컨소시엄

가. (단독)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단독 지원

나. (컨소시엄)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이 반드시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지원

주관기관	참여기관	비고
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	가. 경상북도 소재 중소/중견 기업 나. 비영리기관(대학 및 연구기관 등)	컨소시엄으로 신청 시, 참여기관은 지역제한 없음.

- 컨소시엄으로 지원할 경우, 주관기관은 반드시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만 가능

- 컨소시엄으로 지원할 경우, 지원금의 50%이상 주관기관 사업비로 계상

○ 지원항목 : 중소기업 기술개발

- 「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항 ‘중소기업 기술’이란 중소기업 및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·생산·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함.

○ 지원형태 : 자유공모

-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」 제3조제1항제16호 ‘자유공모’라 함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을 말함.

- 신청기업은 원자력 산업 분야 중 자율적으로 계획하여 연구개발 과제 신청서(기술개발 계획서)를 작성하여 제출

※ 원자력 산업 분야

구분	주요내용
I-SMR	○ 설계, 제조, 검증 기술 등
원전계통안전	○ 원전설계, 건설, 운영 안전기술, 안전해석, 안전관리 및 화재방호 기술 등
기계설비	○ 기계(터빈, 펌프 등), 재료 및 비파괴 기술 등
계측전기설비	○ 계측제어, 전기설비, 운전 및 안전관련 설비/기기/부품 등
방사선	○ 방사선안전, 계통, 사용후핵연료, 방사성폐기물 처리/처분, 방사선 방호, 방패 및 환경영향평가 기술 등
해체	○ 방사능 분석, 해체안전, 제염, 절단, 폐기물처리, 환경복원 기술 등

○ 지원방법 : 직접지원 (포항TP → 지원기업 직접 지급)

가. 지원예산 범위 내, 평가결과 및 지원금 한도에 따라 차등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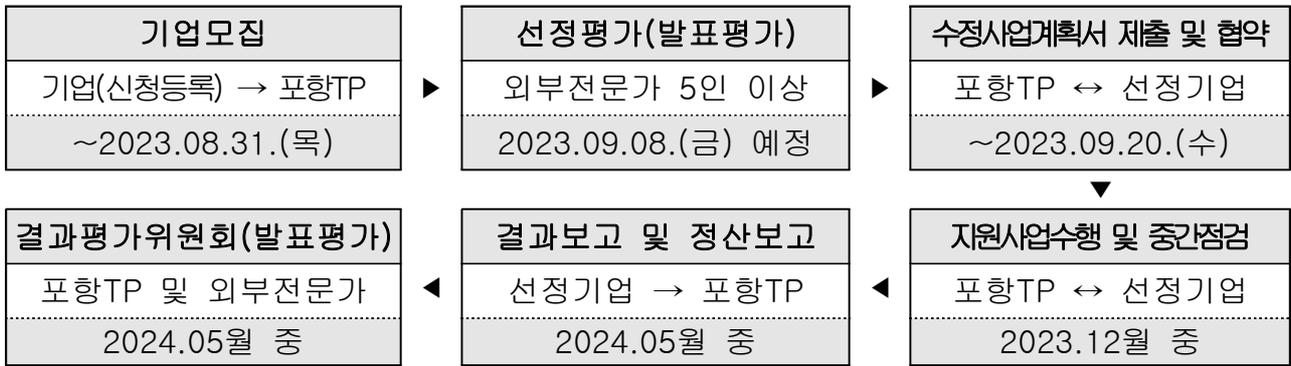
나. 동일한 지원사업 아이템으로 타부처·기관 동일유형 중복 지원 불가

다. 사업비 자부담은 지원금의 10% 현금 매칭 필수

	총사업비	지원금	기업부담금(전액 현금)	비고
예시)	110,000,000원	100,000,000원	10,000,000원	사업비의 모든 예산 항목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

* 부가가치세법 제32조, 제38조에 의거,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매출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세액 이중 공제 방지를 위해 해당사업 총 사업비에 부가가치세는 제외함.

○ 지원절차



- 해당 일정은 계획이며, 지원사업 수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.

○ 지원조건

구분	주요내용						
지원한도	○ 기업당 지원금의 총액 한도 100백만원 이내 지원						
지원형태	○ 경상북도 내 중소기업을 주관기관으로 참여기관과 함께 컨소시엄 형태를 구성하여 사업신청 가능, 단독으로도 지원 가능 ※ 단, 주관기관은 반드시 중소기업만 가능						
소재지 유지	○ 주관기관으로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사업기간 완료일 기준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등록 또는 연구소의 주소지를 경상북도내 소재지로 2년간 유지 - 지원 완료 후 1년 이내 타지역(경상북도 외)으로 이전 시, 지원금의 30% 환수 - 지원 완료 후 1년 이상 2년 이내 타지역(경상북도 외)으로 이전 시, 지원금의 20% 환수						
사업비 구성	○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% 현금 매칭 필수(부가가치세 제외) ※ 예시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 style="width: 33%;">총사업비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지원금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기업부담금</th> </tr> <tr> <td>110,000,000원</td> <td>100,000,000원</td> <td>10,000,000원</td> </tr> </table>	총사업비	지원금	기업부담금	110,000,000원	100,000,000원	10,000,000원
총사업비	지원금	기업부담금					
110,000,000원	100,000,000원	10,000,000원					
사업비 집행	○ (직접지원) 지원금은 1, 2차에 나누어 사업비계좌로 직접 지급 ○ 기업부담금을 먼저 소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 ○ 해당 사업비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금액에 대하여 소급 적용 불가능 ※ 교부결정일 이후 지출증빙이 발급된 건에 한하여 집행 가능						
유의사항	○ 동일한 지원사업 아이템 또는 동일한 지원사업 항목으로 타부처·타기관 동일유형 지원사업 중복 지원 불가 ○ 사업계획서와 상이하게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, 사업아이템과 관련없는 사항으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또는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사업비가 집행 완료된 상태라 하더라도 환수조치 될 수 있음. ※ 단, 사업계획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포항TP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된 내용으로 사업수행 가능						

3 선정평가

○ 평가절차

단계	내용	평가자
1단계	서류평가 (제출서류 적정성 검토)	포항TP 담당자
2단계	발표평가	외부전문가 5인이상

- 추진상황에 따라 평가 일시 및 장소, 평가위원 등은 변경될 수도 있음.
- 발표평가는 대표자 또는 해당 과제 총괄책임자 본인이 참석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

가. 서류평가 : 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, 제출서류 진위여부 검토

- 접수된 과제에 대하여 공고 내용의 충족 여부, 수행기관·책임자 자격유무, 중복과제 지원 준수여부,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, 신청서류 구비여부, 유사·중복성 검토 등을 통하여 공고사항에 부합하는 선정평가 대상과제 결정

-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1회 반려하고 신청기업은 보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

* 결격사유 : 주관기관·참여기관·사업책임자 자격 부적합, 신청서류 누락,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이 확인된 경우

- 사전검토 후 결격사유가 보완되지 않거나 주관기관·참여기관·사업책임자 자격 부적합, 신청서류 누락,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해당사항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 대상과제에서 제외할 수 있음.

나. 발표평가 : 5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 진행

- 평가시간 : 30분(발표 20분, 질의응답 10분)
- 점수산정 :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점수 산정
- 과제선정 :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
- 동일점수 발생 시 “목표 및 내용” 항목이 높은 기업을 우선순위로 선정

○ 평가지표

평가항목	평가내용	배점	
일반현황 (10)	○ 기업의 특허출원 및 수상실적 ※ 해당 과제 관련 기술에 한함	5	
	○ 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 ※ 재무평가: 부채비율 및 매출액 검토	5	
계획의 적정성 (20)	○ 사업의 타당성, 추진일정, 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	10	
	○ 사업기간 및 비용의 적정성, 사업비 집행계획	10	
사업계획 (50)	정책부합성 (20)	○ 지원 필요성, 원자력산업 부합성, 경상북도 원자력산업 생태계 자생적 조성 및 혁신역량 제고 가능성	20
	목표 및 내용 (30)	○ 기술개발 내용 및 목표의 명확성 ○ 목표의 구체성 및 정략목표 수준의 도전성, 연구방법의 창의성, 우수 지식재산권 창출 가능성 등 ○ 연구내용 및 방법의 충실성, 추진전략의 적절성, 연구개발편성의 적정성	30
결과활용계획 (20)	○ 기업발전 기여도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○ 매출, 고용 등 정량적 성과 달성의 효과성	20	
합계		100	

○ 최종선정 : 선정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선정 및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 최종 확정

4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

○ 신청제한

- 가. 신청내용과 동일한 과제로 타기관(지자체 포함)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
- 나. 기업이 부도, 휴·폐업 상태인 경우
- 다. 국세·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
- 라.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
- 마. 개인회생·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
- 바.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1000%이상인 경우
신청제한,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예외
- 사. 외부 회계감사 기업의 경우,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‘의견거절’ 또는 ‘부적정’ 인 경우

< 일시적 재무악화에 대한 예외 >

- ▶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인 경우, 부채비율, 유동비율, 자본잠식에 대해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(예,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등)를 제출해야 함

- 아.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자.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경우(유사한 경우 포함)

※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서 기 생산·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 제품인 경우

○ 지원제외

가. 협약의 해약 :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협약을 해약하고 사업비 전부를 반환

-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음이 판명되었을 경우
- 선정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
- 사업비를 사업계획서 상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

나. 최종 지원금액은 선정평가 심의에 따라 조정 가능

다.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다음의 요령 및 규정에 의거함.

※ 「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(재)포항테크노파크 규정」

※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, 「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름

5 선정기업의 의무

○ 선정기업은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.

※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지침 및 기준 주요사항에 대하여 교육 예정

○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연구과제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.

○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, 점검, 현장확인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.

○ 선정기업은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.

○ 신청 시 유의사항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에 따라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
- 나.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사업자등에게 제재부과금을 부과·징수함.
- 다.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,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함.
- 라.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.
- 마.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 또는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.

※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·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한 것으로 간주,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

○ 선정평가 시 유의사항

- 가. 서류평가 통과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(지침, 기준)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.
- 나.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제 지원기업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- 다. 기업부담금은 협약 시 별도 사업비 계좌로 先 입금 (확인 필수)

○ 사업수행 시 유의사항

- 가.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“2023년 원전관련기술개발 지원사업계획서”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,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기업에게 있음.
- 나. 동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, 지원사업 참여제한,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.
- 다. 선정이후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, 사업비 환수·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.

7 신청 및 접수

- 신청기간 : 공고일~2023.08.31.(목) 18:00까지, ※ 사업비 소진시까지
- 제출서류

No.	서 식 명	해당여부
①	지원신청서 1부, [서식 제1호]	필수
②	기업부담금 현금출자 협약서 1부, [서식 제2호]	필수
③	평가결과 수락 협약서 1부, [서식 제3호]	필수
④	중복지원 금지 협약서 1부, [서식 제4호]	필수
④	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서 원본 1부, [서식 제5호] ※ 해당 사업 참여인력마다 각 1부 제출	필수
⑤	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	필수
⑥	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 1부 ※ 2023년 3월 1일 이후 발급분 제출	필수
⑦	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※ 영리기관(기업)에 한하며,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'표준재무제표증명(국세청 발급분)' 또는 '재무제표 확인(회계사세무사 확인본)' 원본을 제출	필수
⑧	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중소기업확인서 원본 각 1부 ※ 2023년 3월 1일 이후 발급분 제출	필수
⑨	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부	필수
⑩	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확인서 각 1부 [서식 제6호]	컨소시엄 신청 기업만
⑪	기타 전담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	공통

- 신청방법 : 포항TP 홈페이지(<https://www.ptp.or.kr/>) 사업공고에서 사업신청 등록

※ 지원신청서 등록 시 한글파일 양식(hwp)으로 업로드 필수

가. 신청 마감 후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자료 일체는 변경·반환 불가
나. 전산등록 마감일 18:00까지 제출(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)

다. 전산등록기간에 전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과제는 서류접수 불가

- 문의처

담당자	연락처	E-mail
그린에너지센터 정나래 대리	054-223-2255	narae1120@ptp.or.kr